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구성·활동)

[부산지방법원 2014. 5. 16. 2013고합759,946(병합)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정영서(기소, 공판)

【변호인】법무법인해인외2인

【주문】

1

피고인 1을 징역 7년에, 피고인 2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